

2018학년도

신입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안)



안양대학교 입학처

1.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대학	계열	학부(과)		입학 정원	전기		후기	
					정원 외	완전 정원 외	완전 정원 외	
					재외국민 (최대선발인원)	전교육과정 이수자,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교육과정 이수자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신학	인문 예술 대학	신학과		52	5	적정인원	적정인원	적정인원
		사범계	기독교교육과	30	-			
언어 문화 학부		국어국문학전공	120	12				
		영미언어문화전공						
		러시아언어문화전공*						
		중국언어문화전공*						
사범계		유아교육과	35	-				
예술학부		공연예술전공		22	-			
		음악 전공	피아노	17	-			
			성악	13	-			
			관현악	13	-			
사회 과학	사회	글로벌경영학과		60	6			
		글로벌경영학과(야)		63	-			
		관광경영학과*		40	4			
		행정학과		35	3			
		행정학과(야)		30	-			
		공공행정학과(강화)		30	3			
		관광학과(강화)		22	2			
이공	자연	식품영양학과*		40	4			
		ICT 융합 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195	19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					
			통계데이터과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					
			융합소프트웨어전공 (강화)	35	3			
			정보전기전자공학전공(야)	66	-			
			통계데이터과학전공(야)		-			
		도시환경바이오 공학부	도시정보공학전공	80	8			
			환경에너지공학전공*					
			해양바이오공학전공(강화)*	35	3			
			도시정보공학전공(야)	33	-			
디자인 발명창업학부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65	6				
		화장품발명디자인전공						
총 계				1,131	22명 이내	적정인원	적정인원	적정인원

※ 「*」 표시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임

※ 「재외국민 전형(정원 외)」 선발인원은 전체입학정원의 2%인 24명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

※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선발인원은 제한 없음

※ 「사범계」, 「예술학부」, 「야간학부(과)」는 모집하지 않음

2. 전형일정

●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전 기 모 집(3월 입학)		후 기 모 집(9월 입학)
전형	※ 정원 외 · 재외국민 ※ 완전 정원 외 ·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한 자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완전 정원 외 ·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한 자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모집요강 발표	2017. 4. 28(금)		2018. 4. 2(월)
원서접수	·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 외)	2017. 7. 3(월) ~ 7. 7(금) https://enter.anyang.ac.kr www.uwayapply.com	
	· 재외국민과 외국인(완전정원 외)		2018. 6. 1(금) ~ 6. 20(수) https://enter.anyang.ac.kr www.uwayapply.com
합격자 발표	2017. 7. 21(금)		2018. 6. 29(금)
등록기간	2017. 12. 18(월) ~ 12. 21(목) 16:00까지		2018. 7. 23(월) ~ 7. 27(금) 16:00까지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17. 12. 27(수) 21:00까지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17. 12. 28(목) 16:00까지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 및 방문접수 실시함

※ 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s://enter.anyang.ac.kr>) 참고

3. 전기 및 후기모집 주요사항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서류평가 100%
(고등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어학능력, 수상실적, 봉사활동 등 교내·외 활동, 기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선발방법

- 서류평가 총점이 본교에서 정한 일정기준 이상자 전원 선발

5. 지원자격

① 기본 자격요건

12년 이상의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다음의 유형별 지원자격, 외국학교 인정 기준, 재학기간 인정기준, 지원자격별 부모 최저 외국 체류기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② 유형별 지원자격

구 분	유 형	지 원 자 격	재학기간 인정기준
정원 외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1.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 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 언론기관특파원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 공무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 외국정부의 범위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 기타 국가기관·지방정부·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의 범위 - 정부 간의 국제 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과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비연속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 자영업, 현지 법인 근무, 해외 선교 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2년(4학기) 이상 이수한 자(복수국적자 제외)	
완전 정원 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12년 이상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인 자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한 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복수국적자 제외)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시도교육감이 학력심사위원회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자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중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표(3급 이상)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외국인 신입생은 졸업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급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③ 재외국민 자격기준

구분	기간(년)								비 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2	2	2		2	2	2	2	
·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2	2	2	2	2	2	2	2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2	2	2	2	2	2	2	2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2	2	2	2	2	2	2	2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2	2	2	-	-	-	-	-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	12	12	-	-	-	-	-	
1) 해외근무자(상사직원,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은 외국에 상근하는 형태만 인정합니다. (유학, 교육, 연수,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2) 상사직원은 배우자 및 자녀와 동시에 귀국하지 않아도 되며, 귀국 후 동일국에 재출국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상사직원 및 해외근무자 자녀의 경우, 부모의 외국 근무기간(인사발령 기준)내에서 재학한 외국 재학기간을 지원 자격을 위한 외국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4) 기타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부모의 체류기간은 학생의 외국 재학 기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